

제358회 임시회
2017. 8. 30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조,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2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
-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('18.01.01.~'22.12.31.)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)
- 수탁기관 : 영유아보육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
※ (현)수탁기관 : (사)충북어린이집연합회 '15.01.01~'17.12.31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 업 비 : 31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
- 위탁 주요사무
 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,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,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,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 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,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,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 -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검토의견

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
○ 종합의견

-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,
-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육교직원, 영유아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,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타당함.
- 다만,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, 선정 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으로 지역의 육아중심 기관으로 명품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충청도가 보육에 허브가 되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임. ※ 전국 16개 광역 시·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

관련규정 발췌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
3.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4.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
5.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
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□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

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 3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 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
 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1.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
 2.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
 3.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
 4.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·단체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,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 2.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
 4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,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-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, 신청서류,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

- 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 할 수 있다.
-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⑤ 삭제
-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-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